

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03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년 9월 28일
제안자 : 도시계획균형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현행 조례 부칙의 존속기한 부칙을 삭제함
-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함(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)

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의2를 삭제한다.

조례 제6471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제10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존속기한)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1월 18일까지로 한다.

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〈 수정안 조문 대비표 〉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5조(공공미술위원회 의 설치)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부칙<제6471호,2017.5.18.> 제1조~제9조(생략) <u>제10조(존속기한) 서울 특별시 공공미술위원 회의 존속기한은 5년 으로 한다.</u></p> <p>부칙<제7724호,2020.10.5.> <u>이 조례는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제5조(공공미술위원회 의 설치) (생략)</p> <p><u>제5조의2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1월 18일까지로 한 다.</u>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부칙 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.</u></p>	<p>제5조(공공미술위원회 의 설치) (생략) (현 행과 같음)</p> <p><u>제5조의2 <삭 제></u></p> <p>부칙<제6471호,2017.5.18.> 제1조~제9조(생략) <u>제10조 <삭 제></u></p> <p>부칙 <u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 는 2022년 11월 19일 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존속기한) 서울 특별시 공공미술위원 회의 존속기한은 2027 년 11월 18일까지로 한 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6471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제10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존속기한)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1월 18일까지로 한다.

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〈 신 · 구 조문대비표 〉

현 행	개 정 안
<p>부칙<제6471호,2017.5.18.> 제1조~제9조(생략) <u>제10조(존속기한) 서울특별시 공공 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 로 한다.</u></p> <p>부칙 <u>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부칙<제6471호,2017.5.18.> 제1조~제9조(생략) <u>제10조 <삭 제></u></p> <p>부칙 <u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존속기한) 서울특별시 공공 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1월 18일까지로 한다.</u></p>